##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종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165 발의연월일: 2024. 9. 23.

발 의 자:김종양・주호영・김태호

조승환 • 박성훈 • 김미애

정연욱 • 이헌승 • 고동진

김기웅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을 초과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, 당선인이 선거에 있어서 「공직선거법」을 위반하거나, 선거사무장 등이 매수죄 등으로 인하여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, 이 경우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비용 반환의 의무가 있는 후보자가 재산 부족 등을 이유로 반환을 하지 않아 현행 규정의 실효성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으로, 일 부 후보자의 경우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 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 음.

이에 중대한 선거관련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이 기탁

금과 선거비용의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른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, 당선무효 될 수 있는 중대한 선거관련범죄로 기소되거나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이나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불송치결정,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의 확정판결 이후 이를 지급하도록 하여 반환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49 조제7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###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제7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12항(종전의 제11항) 중 "第10項"을 "제11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3항(종전의 제12항) 본문 중 "제10항"을 "제11항"으로 한다.

① 제26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람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지된 금액 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.

제52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2. 제49조제7항을 위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아 니하고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

제57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 규정된 죄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이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의하여 고발된 때(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의 당선이 모두 무효로 되는 죄를 범하여 기소 또

는 고발된 때를 말한다)에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기탁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탁금의 반환을 유예한다. 이 경우 기소 또는 고발된 사람에 대한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거나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유예한 기탁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.

제60조의2제8항 전단 중 "제49조제10항"을 "제49조제11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0항 단서 중 "제49조제12항"을 "제49조제13항"으로 한다. 제135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 규정된 죄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이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된 때(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후보자의 당선이 모두 무효로 되는 죄를 범하여 기소 또는 고발된때를 말한다)에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선거비용 전액의 보전을유예한다. 이 경우 기소 또는 고발된 사람에 대한 불송치결정 또는불기소처분이 있거나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유예한 선거비용을 지체 없이 보전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선거비용 등의 미반환자의 후보자등록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4 9조제7항 및 제52조제1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의 접수를 받는 경우부 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9조(후보자등록 등) ① ~ ⑥	제49조(후보자등록 등) ① ~ ⑥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⑦ 제265조의2제1항 전단에 따
	라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
	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여야 하
	는 사람이 같은 조 제2항에 따
	라 고지된 금액을 반환하지 아
	<u>니한 경우에는 후보자로 등록</u>
	<u>될 수 없다.</u>
<u>⑦</u> ~ <u>⑩</u> (생 략)	$\underline{8} \sim \underline{1}$ (현행 제7항부터 제 $1$
	0항까지와 같음)
<u>⑪</u> 누구든지 選擧期間중 管轄選	<u>®</u>
擧區選擧管理委員會가 第10項	<u>제11항</u>
의 規定에 의하여 回報받은 前	
科記錄을 閱覽할 수 있다.	
<u>⑩</u>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	<u> </u>
제4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와	
<u>제10항</u> 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	<u>제11항</u>
받거나 回報받은 서류를 選擧	
區民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	
야 한다. 다만, 선거일 후에는	<u>-</u>
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.	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
제52조(등록무효) ①候補者登錄후 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候補者의 登錄은 無效로 한다.

1. ~ 4. (생 략) <신 설>

5. ~ 11. (생략)

② ~ ④ (생 략)

第57條(寄託金의 반환 등) ① ~ ④ (생 략)

<신 설>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4의2. 제49조제7항을 위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을 반환 하지 아니하고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

5. ~ 11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第57條(寄託金의 반환 등) ① ~ 第57條(寄託金의 반환 등) ① ~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 규정된 죄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이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된 때(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의 당선이 모두 무효로 되는 죄를 범하여 기소 또는 고발된 때를 말한다)에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기탁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

⑤ (생략)

제60조의2(예비후보자등록) ① ~

- ⑦ (생략)
- ⑧ 예비후보자의 전과기록조회 및 회보에 관하여는 <u>제49조제1</u> <u>0항</u>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선거 기간개시일 전 150일"은 "선거 기간개시일 전 150일(대통령선 거의 경우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 60일을 말한다)"로 본다.
- ⑨ (생 략)
- 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와 제8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회보받은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이후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(제

기탁금의 반환을 유예한다.	<u>)</u>
경우 기소 또는 고발된 사람이	케
대한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	소
처분이 있거나 무죄의 판결여	<u>)</u>
확정된 경우에는 유예한 기탁	<u></u>
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형	<u>한</u>
<u>다.</u>	
<u>⑥</u> (현행 제5항과 같음)	
세60조의2(예비후보자등록) ①	~
⑦ (현행과 같음)	
8	_
제49조제	1
<u>1항</u>	_
	_
	_
	_
	_
9 (현행과 같음)	
10	_
	_
	_
	_
	_
	_

<u>49</u>조제12항에 따라 공개하는 <u>49</u>조제13항-----경우는 제외한다).

①·① (생 략)

第135條의2(選舉費用補塡의 제한) 第135條의2(選舉費用補塡의 제한)

① ~ ④ (생 략)

<신 설>

⑤ ~ ⑦ (생 략)

①·① (현행과 같음)

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63 조부터 제265조까지에 규정된 죄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 이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 에 의하여 고발된 때(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 의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의 당선이 모두 무효로 되는 죄를 범하여 기소 또는 고발된 때를 말한다)에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선거비용 전액의 보전 을 유예한다. 이 경우 기소 또 는 고발된 사람에 대한 불송치 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거 나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에는 유예한 선거비용을 지체 없이 보전하여야 한다.

⑥ ~ ⑧ (현행 제5항부터 제7 항까지와 같음)